

【업무개시】 2015. 01. 01. ~ 2015. 12. 31까지로 한다.

【계약의 만기】

1. 계약의 만기시는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단, 만기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계약시까지 기 계약된 내용대로 수행한다.

2. 유지보수업무 보수료의 증·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【유지보수업무의 범위】

1. 정기점검은 점검표에 의해 월 2회 이상 실시한다.

2. 수시점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.

3. 점검,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해 공급한다.

- 각종 오일류(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)

- 탄소 브러시

- 각종 고정접점

- 셉트리드선

- 고정 카본

- 각종 퓨즈(속단퓨즈 제외)

- 각종 신호기용 램프(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)

- 점검용 소모자재(볼트, 너트 등)

- 형 겐

4. 아래 각 기계부분의 먼지 및 기름제거 작업

-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

- 마그네트 브레이크

- 플로어 컨트롤러

- 수전반, 제어반, 신호반

- 카 관련 각 부분 장치

- 도어 개폐기구 및 각종 도어 장치

- 각층 위치표시기 및 승장버튼
- 카측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
- 조속기, 균형추
-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
-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
- 상하각 리미트 스위치

5. 기타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6. 점검 및 보수에 있어서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 및 승강기 점검보수에 관한 일반적 관례를 준용한다.

【유지보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】

1.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정에 따라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2. 해당동의 승강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자연적인 조건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

【계약의 해지】

1. 정당한 사유로 해지요청을 통보할 때
2. 보수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태만히 할때
3. 점검업체가 정당한 사유로 점검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출입제한 등으로 유지보수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경우
4. 쌍방이 법령 등 기타사정에 따라 중대한 변화로 본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
5. 유지보수업체의 사정에 의해 해지 요청이 있을 때

【해지방법】

본 계약이행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쌍방은 해지통지를 1개월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【보수료의 지급】

1. 유지보수업체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일지를 구청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한다.
2. 점검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보수료를 일할 지급한다.

【담당자의 지정 및 상호협조】

1. 유지보수업체는 승강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영에 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시 점검을 위하여 관리책임자(보수자격증 소지자)를 지정하여야 하며, 승강기설비보수업체의 인사이동시는 즉시 변경 통보하여 쌍방간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2. 구청 책임담당자 및 보수업체의 관리책임자의 유고시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, 대행자를 즉시 지정하여야 한다.
3. 보수업체는 점검 시 구청 책임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【손해배상 책임】

1. 유지보수업체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유지보수 업체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2. 손해배상 범위 : 승강기내 피해가 발생한 대인과 대물
3. 유지보수개시일 이후 업체의 귀책사유로 배상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유지보수업체는 서대문구청에게 배상책임을 지며 그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보험가입에 의한다.
4. 서대문구청은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유지보수업체에게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5. 유지보수업체의 손해배상 면책
 - 천재지변 기타 공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나 건물폐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손해
 - 보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
 - 보수업체 관리담당자의 조치사항을 구청이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고

- 구청 책임담당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
- 구청이 임의로 전기회로 변경, 부품제거, 이설교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

【소의관할】

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의 관할은 구청 소재지로 한다.

【일반사항】

1.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손해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.
 - 점검책임자 기술자격증 사본 1부.